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5. 20.
북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0. 5. 13. 정혜경 의원 외 4명

나. 회부일자: 2020. 5. 13.

다. 상정일자: 제23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20. 5. 20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정혜경 의원

가. 제안이유

기존 상위법인 「자연재해대책법」의 개정된 사항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삭제되어 이와 관련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◦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의 폐지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신준호)

가. 조례 폐지 배경

◦ 상위법령에서 국가위임사무조항이 삭제되어 이에 맞는 법령의 구조적 정합성을 이루기 위함.

나. 주요 조문 검토 및 종합의견

- 기존 상위법인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조제5항의 개정(2016.1.27. 개정, 2017.1.28. 시행)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삭제되고,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조의 개정(2017.10.24. 개정, 2018.10.25. 시행)으로 위원회의 명칭 등 관련 용어가 수정되었으며,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업무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·제3항에 따라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이므로 조례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아 본 조례는 폐지하고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은 필요시 내부규정 정도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